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40

발의연월일: 2024. 11. 13.

발 의 자:김원이·김교흥·오세희

남인순 • 이정문 • 김승원

송재봉·서삼석·양문석

이재관 의원(10인)

제안이유

소상공인이 창업을 하거나 기업이 프랜차이즈 매장 등을 운영할 때 건축물의 외관과 실내장식(건축물 내부의 설비 또는 장식 등)은 매장 홍보와 고객유치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매장 등의 건축물은 해당 브랜드의 고유가치를 담아내고 영업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의 보호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음.

그러나 현행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은 물품, 글자체 및 화상(畫像·도형 및 기호 등)으로 한정돼 있어 건축물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어려운 실정임.

또한 건축디자인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권리자가 모방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가.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건축물을 포함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 나.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건축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도 디자인의 실시행위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7호가목).
- 다. 점포, 사무소 기타 시설 내부의 실내장식을 구성하는 물품, 화상 또는 건축물에 관한 디자인은 실내장식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 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 라. 제42조의2 신설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디자인등록결정 이후 의 직권 재심사의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62조 및 제66조의2).

법률 제 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글자체 및 화상(畫像)"을 "글자체, 화상(畫像) 및 건축물(건축물의 부분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생산"을 "생산(건축물의 경우 건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실내장식 디자인) 점포, 사무소 기타 시설 내부의 설비 또는 장식(이하 "실내장식"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물품, 화상 또는 건축물에 관한 디자인은 실내장식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6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42조까지"를 각각 "제42조까지, 제42조의2"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2조까지"를 "제42조까지 및 제42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린 경	게 ' 6 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1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을	글자체, 화상(畫像) 및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	건축물(건축물의 부분을 포함
·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	<u>한다)</u>
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u>.</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	7
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u>.</u>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	가
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u>생산</u> ·사용·양도	<u>생산(건축물의 경</u>
·대여·수출 또는 수입하	우에는 건축을 말한다. 이
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u>하 같다)</u>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	
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생 략) <u><신 설></u>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 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제4항, 제39조부터 <u>제42조까지</u>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3. (생략)
- ②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 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실내장식 디자인) 점		
포, 사무소 기타 시설 내부의		
설비 또는 장식(이하 "실내장		
<u>식"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물</u>		
품, 화상 또는 건축물에 관한		
디자인은 실내장식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		
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		
1. (현행과 같음)		
2		
제42조까지, 제42조의2		
<u> </u>		
3. (현행과 같음)		
(2)		
		

- 1. (생략)
- 2. 제27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만 해 당한다), 제34조, 제37조제4항 및 제39조부터 <u>제42조까지</u>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 을 수 없는 경우

3. (생략)

③ ~ ⑤ (생 략)

-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디자 인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결정 을 취소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 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 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1. 거절이유가 제35조제1항, 제37조제4항, 제40조부터 <u>제42조</u>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2
<u>제</u> 42조까지, 제
42조의2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①
1
<u>제42조</u>
<u>까지 및 제42조의2</u>

2.・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